



제 422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6428호)

2025.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임 재 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사업자의 휴업신고 부담 완화를 위한 신고기간 정비	3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정 부
2. 제 안 일 : 2024. 12. 12.
3. 회 부 일 : 2024. 12.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상레저사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5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수상레저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사업자의 휴업신고 부담 완화를 위한 신고기간 정비

현행법에서 수상레저사업자가 등록된 사업기간 중에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관계없이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완화하여 15일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 및 제2항).

현 행	개 정 안
제41조(휴업 등의 신고) ① 수상레저사업자가 등록된 사업기간 중에 <u>휴업</u> 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휴업 등의 신고) ① ----- ----- 1 <u>5일 이상 휴업</u> ----- ----- ----- -----.
② <u>수상레저사업자</u> 가 휴업한 수상레저사업을 다시 개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u>제1항에 따라 휴업을 신고한 수상레저사업자</u> ----- ----- ----- -----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에서 수상레저사업자¹⁾는 휴업하는 기간과 상관없이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할 때 행정청에 그 내용을 신고(휴업의 경우 휴업 3일 전까지, 재개업의 경우 재개업 7일 전까지)하도록 규정함에 따라,²⁾

수상레저사업자는 단기간의 휴업 후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어³⁾ 잠시 휴업이 필요한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행정적 부담이 되어왔음.

이에 개정안은 15일 미만의 단기 휴업에 대한 신고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영업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정부는 영업자가 영업 상황에 따라 잠시 휴업했다가 다시营业을 하는 경우에도 매번 이를 신고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함께 정비안을 마련하여 일괄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⁴⁾

1) 수상레저사업자는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을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이하 “수상레저사업”이하 함)을 경영하는 자를 말함(현행법 제37조제1항)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5조(휴업 등의 신고)**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수상레저사업 휴업·폐업 신고서에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휴업 또는 폐업하기 3일 전까지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④ 수상레저사업자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을 다시 개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상레저사업 재개업 신고서에 제32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시 개업하기 7일 전까지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제6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략)

5.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상레저사업자

4) 법제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16개 법률의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음(‘24.12.10.)

문 의 처

02)6788-5425

참고1

정비대상 법률 목록 및 개정 내용

연번	정비 대상 법률	업종	개정 내용	소관 부처
1	법무사법	법무사업	30일 이상 휴업시 휴업신고	법무부
2	변호사법	변호사업		
3	외국법자문사법	외국법자문사업		
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상시계측관리업		행정안전부
5	승강기 안전관리법	승강기 제조·수입업, 승강기 유지관리업		
6	자연재해대책법	방재관리대책 대행업		
7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업		
8	인삼산업법	인삼류제조업		농림축산식품부
9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기술용역업		산림청
10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엔지니어링사업		산업통상자원부
1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폐자동차재활용업, 폐가스류처리업		환경부
1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허가대행업		
13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수중레저사업		해양수산부
14	어장관리법	어장정화·정비업		
15	항로표지법	위탁관리업		
16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사업	15일 이상 휴업시 휴업신고	해양경찰청

참고2

수상레저사업 등록 현황 : 총 1,095개업체('24년도 기준)

구 분		업 체 수(개소)	수상레저기구 수(대)
해경 (해수면)	동해청	219	6,532
	서해청	29	308
	남해청	210	3,043
	제주청	102	1,705
	중부청	38	701
지자체 (내수면)	강원도	186	2,271
	경상북도	27	396
	대구광역시	3	46
	전라남도	17	288
	전라북도	26	209
	광주광역시	1	24
	부산광역시	2	70
	울산광역시	2	12
	경상남도	32	343
	제주시	2	84
	서귀포시	3	65
	인천광역시	2	58
	충청남도	8	168
	충청북도	26	469
	대전광역시	2	88
	세종특별자치시	-	-
	서울특별시	19	325
	경기도	139	2,691
계		1,095	19,896